

의안번호	2210957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5. 9. 19.
추 계 번호	25B337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매년 인공지능산업분야 인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 5,000만원(연평균 2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분야 인력 관련 실태조사 (안 제14조, 안 제16조제1항)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1년마다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함. 다만, 전략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역을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하여야 함(제1항)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데이터센터, 초고성능컴퓨터 및 첨단그래픽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컴퓨팅 인프라에 관한 시설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4. 그 밖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이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입주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5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8. 그 밖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재량규정
4	안 제7조(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기술이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인공지능산업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인공지능기술(이하 “인공지능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인공지능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을 개발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이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경우 시설 및 인프라의 우선 사용,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인공지능전략과제로서 인공지능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확산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3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신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인공지능전략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항) 1.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제공 2. 인공지능신기술 분야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인공지능전략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신기술에 관한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인공지능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전략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특허청장은 인공지능전략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9항)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2.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거래·사업화 촉진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재량규정
7	안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인공지능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인공지능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인공지능신기술과 융합한 제품·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재량규정
8	안 제11조(기업공동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신속한 육성·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2조(인공지능 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의 육성과 양성을 위하여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이 인공지능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4항) 1.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의무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10	안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제5항) 1. 인공지능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4조(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 조사)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15조(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지역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16조(인공지능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청년인력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인력의 양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1.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인공지능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인공지능산업 내 청년인력에 대한 우대 촉진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17조(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제13조에 따른 해외인력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5	안 제19조(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 및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전문양성인(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재량규정
16	안 제20조(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음(제4항)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 4. 공원 및 공동구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6항)	
18	안 제25조(인공지능 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음(제2항)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5.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차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수입금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음(제3항) 1. 인공지능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2.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컴퓨팅 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인공지능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7. 인공지능산업 육성 전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0.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	안 제26조(조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인공지능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제3항)	의무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산업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제4항)	의무규정
20	안 제27조(고용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종합·실행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 가능하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안 제6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또는 직접 설치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지역, 조성·운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7조(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td><td>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팹리스 육성</td><td>19,328</td></tr><tr><td>PIM인공 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td><td>PIM 성능 구현을 위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컴퓨팅 시스템에 연동하기 위한 SW 및 인터페이스 등 기반기술 개발</td><td>41,458</td></tr><tr><td>인공지능 반도체SW 통합플랫폼 기술개발</td><td>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국내 기술의 인공지능반도체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SW통합플랫폼 기술개발</td><td>7,733</td></tr><tr><td>거대인공 신경망 인공지능 반도체SW 기술개발</td><td>NPU+PIM 이기종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한 서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LLM 등 최신 AI모델 구동을 위한 SW기술개발</td><td>5,330</td></tr><tr><td>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기술개발</td><td>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 가속 및 메모리 중심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워크로드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개발</td><td>10,000</td></tr><tr><td>AI반도체 첨단이종 집적기술 개발</td><td>각 기능을 별도 칩으로 생산 후 첨단 이종접합으로 단일 칩으로 동작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반도체 미세공정 설계 한계 극복</td><td>8,250</td></tr><tr><td>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td><td>국가전략자산인 AI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AI 컴퓨팅 HW·SW 핵심기술 확보</td><td>36,620</td></tr><tr><td>칩렛기반 저전력온 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td><td>칩렛기반 허브 SoC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sLLM 및 저전력 SNN 가속기 등 온디바이스 특화 AI반도체 기술개발</td><td>4,00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팹리스 육성	19,328	PIM인공 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PIM 성능 구현을 위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컴퓨팅 시스템에 연동하기 위한 SW 및 인터페이스 등 기반기술 개발	41,458	인공지능 반도체SW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국내 기술의 인공지능반도체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SW통합플랫폼 기술개발	7,733	거대인공 신경망 인공지능 반도체SW 기술개발	NPU+PIM 이기종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한 서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LLM 등 최신 AI모델 구동을 위한 SW기술개발	5,330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기술개발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 가속 및 메모리 중심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워크로드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개발	10,000	AI반도체 첨단이종 집적기술 개발	각 기능을 별도 칩으로 생산 후 첨단 이종접합으로 단일 칩으로 동작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반도체 미세공정 설계 한계 극복	8,250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국가전략자산인 AI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AI 컴퓨팅 HW·SW 핵심기술 확보	36,620	칩렛기반 저전력온 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칩렛기반 허브 SoC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sLLM 및 저전력 SNN 가속기 등 온디바이스 특화 AI반도체 기술개발	4,00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팹리스 육성	19,328																									
			PIM인공 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PIM 성능 구현을 위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컴퓨팅 시스템에 연동하기 위한 SW 및 인터페이스 등 기반기술 개발	41,458																									
			인공지능 반도체SW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국내 기술의 인공지능반도체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SW통합플랫폼 기술개발	7,733																									
			거대인공 신경망 인공지능 반도체SW 기술개발	NPU+PIM 이기종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한 서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LLM 등 최신 AI모델 구동을 위한 SW기술개발	5,330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기술개발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 가속 및 메모리 중심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워크로드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개발	10,000																									
			AI반도체 첨단이종 집적기술 개발	각 기능을 별도 칩으로 생산 후 첨단 이종접합으로 단일 칩으로 동작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반도체 미세공정 설계 한계 극복	8,250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국가전략자산인 AI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AI 컴퓨팅 HW·SW 핵심기술 확보	36,620																									
			칩렛기반 저전력온 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칩렛기반 허브 SoC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sLLM 및 저전력 SNN 가속기 등 온디바이스 특화 AI반도체 기술개발	4,00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8조(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전략사업 관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의 대상 및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9조(인공지능신기술 연구 개발성과의 확산)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 등이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및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사업화, 실증 등을 지원하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AI혁신펀드</td><td>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AI초기 분야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 기업 육성</td><td>100,000</td></tr><tr><td>연구개발특구 육성 (AI글로벌빅 테크육성)</td><td>글로벌 AI·AX 빅테크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개 연구개발특구 내 AI·AX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지원</td><td>10,000</td></tr><tr><td>AI반도체 실증지원</td><td>AI데이터센터·온디바이스 AI 등 주요 수요 분야와 연계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td><td>98,37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AI혁신펀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AI초기 분야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 기업 육성	100,000	연구개발특구 육성 (AI글로벌빅 테크육성)	글로벌 AI·AX 빅테크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개 연구개발특구 내 AI·AX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지원	10,000	AI반도체 실증지원	AI데이터센터·온디바이스 AI 등 주요 수요 분야와 연계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98,37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AI혁신펀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AI초기 분야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 기업 육성	100,000													
연구개발특구 육성 (AI글로벌빅 테크육성)	글로벌 AI·AX 빅테크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개 연구개발특구 내 AI·AX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지원	10,000													
AI반도체 실증지원	AI데이터센터·온디바이스 AI 등 주요 수요 분야와 연계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98,37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6	안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범사업의 대상, 내용,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1조(기업공동연구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규모, 기업공동연구소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2조(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인력 등을 육성·활용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사업 및 지원 등의 내용,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td><td>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td><td>30,000</td></tr><tr><td>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td><td>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천형 고급 인재 양성</td><td>13,500</td></tr><tr><td>지역디지털 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td><td>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td><td>31,382</td></tr><tr><td>생성AI선도 인재양성</td><td>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td><td>8,700</td></tr><tr><td>AI스타 펠로우십 지원</td><td>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인재 양성</td><td>9,000</td></tr><tr><td>디지털 전문· 융합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td><td>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td><td>10,059</td></tr><tr><td>디지털 전문· 융합인재양성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td><td>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td><td>6,78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3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천형 고급 인재 양성	13,5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31,38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8,700	AI스타 펠로우십 지원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인재 양성	9,000	디지털 전문· 융합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10,059	디지털 전문· 융합인재양성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6,78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3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천형 고급 인재 양성			13,5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31,38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8,700																										
AI스타 펠로우십 지원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인재 양성	9,000																										
디지털 전문· 융합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10,059																										
디지털 전문· 융합인재양성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6,780																										
	안 제15조(인공지능산업 지역인 력 확보)																											
	안 제16조(인공 지능 청년인력 의 양성·활용)	제3항 – 청년인력 양 성·활용 촉 진 지원																										
	안 제17조(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 <th>사업개요</th> <th>2025</th> </tr> </thead> <tbody> <tr> <td>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디지털분야해외 석학유치지원)</td> <td>해외 석학급 최고급 인재의 국내대학(원) 유치를 지원하여 국내 고급인재 지도·세미나 등을 통한 역량 제고 추진</td> <td>3,000</td> </tr> <tr> <td>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td> <td>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td> <td>5,000</td> </tr> </tbody>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디지털분야해외 석학유치지원)	해외 석학급 최고급 인재의 국내대학(원) 유치를 지원하여 국내 고급인재 지도·세미나 등을 통한 역량 제고 추진	3,000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	5,00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디지털분야해외 석학유치지원)	해외 석학급 최고급 인재의 국내대학(원) 유치를 지원하여 국내 고급인재 지도·세미나 등을 통한 역량 제고 추진	3,000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	5,000											
10	안 제14조(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안 제16조(인공지능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제1항 -인공지능산업 분야 청년인력 활용 현황 실태조사	○	- 유사사례 참조 -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 및 해외 전문인력, 청년인력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										
11	안 제19조(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 및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및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20조(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및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3	안 제2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4	안 제25조(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5	안 제26조(조세 등에 관한 특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세제 지원의 대상 및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6	안 제27조(고용보조금의 지급)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고용보조금의 지급 기준,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 및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 청년인력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건의 실태조사 용역으로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 및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 청년인력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모두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요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므로 단일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임
- 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 및 해외 전문인력, 청년인력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14조, 안 제16조제1항)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 및 해외 전문인력, 청년인력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인공지능산업분야 인력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인공지능산업분야 인력 관련 실태조사는 안 제16조제1항에서 청년인력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점과 유사사례(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참고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¹⁾에 따라 매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실시 예산은 2억 5,000만원임

1)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정부가 매년 인공지능산업분야 인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 5,000만원(연평균 2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인공지능산업분야 인력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분야 인력 관련 실태조사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